

부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12. 18)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주택과장 박종각)

제안이유

-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방개발 촉진에 따른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바 목적 사업이 완료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 1980. 03. 16 조례 제366호

개정 1980. 07. 04 조례 제377호

개정 1980. 07. 15 조례 제388호

개정 1981. 09. 24 조례 제447호

개정 1982. 04. 13 조례 제472호

개정 1982. 04. 30 조례 제515호

개정 1982. 12. 09 조례 제559호

개정 1984. 01. 25 조례 제605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의한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대지의 조성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한다.

제2장 농어촌 주택사업

제5조 (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용자금 및 농업협동조합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이하 "용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 (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협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용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된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을 지정 운영하고 용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용자금 채권 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용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자금의 신청)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용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용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용자 및 보조) ①시장은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용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용자금의 이율과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사업

2. 이율 : 무이자

3.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균분 상환

4. 주택개량 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 주택개량 용자금

이율 : 자금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융자금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바. 택지조성사업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④제3항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2호 내지 마목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융자사업중 할부금 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장 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제10조 (세입세출) ①시 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공장

제품의 판매 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시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 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량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장 국민주택사업

제11조 (세입세출) ①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환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익금, 공채 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계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 주택과 부대 및 복지시설의 관계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2조 (용자조건) 국민주택기금의 용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운용조건에 의한다.

제13조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 ①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용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②할부상환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한국주택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4조 (용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용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용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5장 보 칙

제17조 (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로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용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1980. 3. 16 조례 제366호>

①(시행일) 이 조례 준칙은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에 조례 준칙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 준칙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칙 <1980. 7. 4 조례 제377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용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용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0. 7. 15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9. 24 조례 제4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을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 4. 13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9 조례 제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82. 6.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 1. 25 조례 제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용자된 자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526호
의결 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1. 1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방개량 촉진에 따른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바 목적 사업이 완료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 첨 부: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 1980. 03. 16 조례 제366호

개정 1980. 07. 04 조례 제377호

개정 1980. 07. 15 조례 제388호

개정 1981. 09. 24 조례 제447호

개정 1982. 04. 13 조례 제472호

개정 1982. 04. 30 조례 제515호

개정 1982. 12. 09 조례 제559호

개정 1984. 01. 25 조례 제605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의한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대지의 조성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한다.

제2장 농어촌 주택사업

제5조 (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용자금 및 농업협동조합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이하 "용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 (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협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용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된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을 지정 운영하고 용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용자금 채권 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용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자금의 신청)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용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용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용자 및 보조) ①시장은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용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용자금의 이율과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사업

2. 이율 : 무이자

3.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균분 상환

4. 주택개량 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 주택개량 용자금

이율 : 자금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융자금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바. 택지조성사업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④제3항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2호 내지 마목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융자사업중 할부금 상환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장 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제10조 (세입세출) ①시 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공장

제품의 판매 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시 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 사업의 세출은 제경비 기타 주택개량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장 국민주택사업

제11조 (세입세출) ①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환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익금, 공채 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계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 주택과 부대 및 복지시설의 관계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2조 (용자조건) 국민주택기금의 용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운용조건에 의한다.

제13조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 ①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용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②할부상환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한국주택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4조 (용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용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용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5장 보 칙

제17조 (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로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용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1980. 3. 16 조례 제366호>

①(시행일) 이 조례 준칙은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에 조례 준칙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 준칙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칙 <1980. 7. 4 조례 제377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용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용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0. 7. 15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9. 24 조례 제4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을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 4. 13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30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9 조례 제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82. 6.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 1. 25 조례 제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용자된 자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